

●환경부고시제2018-225호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환경부고시제2018-226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26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법령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폐차 대상인 전기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배터리로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
3. “분리”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5. “보관”이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매각 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비용 부담) 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

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시·도지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반납 등의 비용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① 시·도지사는 배터리의 분리, 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재활용, 매각 등으로 결정되어 처리하고자 하는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기준) ① 배터리의 분리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등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이 제공하는 매뉴얼

3.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매뉴얼

② 제1항에 따라 배터리 분리를 실시하는 자(이하 “분리 작업자”라 한다)는 사전에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매뉴얼의 배터리 분리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 분리 전에 다음 각 호의 보호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고 착용 상태, 장비의 손상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조된 상태의 전기 고압 안전 고무 장갑, 안전 고글, 전기 안전 신발, 내산성 앞치마 착용

2. 접착 절연 테이프, 고압 절연 고무 매트, 안전막, 고압 절연 도구, 고압 절연 스틱 등

④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 분리시 배터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수령시 고전압 배터리의 외관 및 기능 손상 여부
2. 고전압 배터리의 손상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 및 수입업자의 특정 지침이나 관련된 국내 법규 등에 따라 처리
3. 고전압 배터리 제거 전 차량 주변에 “출입 제한” 및 차량에 “고압” 표시 부착
4. 급성독성(흡입) 및 수생환경유해성(만성) 위험이 있는 NMC계 리튬이차전지의 유출 주의

⑤ 분리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절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2. 배터리를 운반하는 장비의 경우 주어진 용량 이상의 하중을 가하면 안되고, 정식 운반 전에 시범 운반작업을 수행해서 장비에 주어지는 힘을 체크해야함
3. 운반장비에 배터리를 고정할 때에는 3개 이상의 고정 부위를 포함해야 함
4.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절단 장비는 사전체크를 해야 하고, 절단 부분을 고정해서 작업자를 보호해야 함

⑥ 분리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배터리의 분리장소는 소방설비, 알람설비, 응급설비 등과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2. 배터리의 분리장소의 바닥은 단단하고 틈이 없어야 하며, 폐수 처리시스템과 같은 환경보호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배터리의 분리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어야 함

제7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방법) ① 고전압 전기 장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화 장치의 스위치를 끄고 키를 제거
2. 주 배터리와 기타 보조 12V 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한 후 모든 배터리 단자의 전기를 끊음
3. 보조 배터리 등의 전원 장치가 내·외부에 남아 있거나 차량에 점프 스타트나 충전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4. 서비스 플러그를 제거하거나 분리 스위치를 꺼서(제조업체마다 다름) 고전압시스템을 해제, 서비스 플러그/스위치에 접근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참조

② 고전압 배터리의 분리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압 케이블 터미널을 분리하기 전에 적합한 전압계로 터미널간 전압이 0V 인지 확인
2. 고전압 배터리에서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 분리
3.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동차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 절연처리
4. 누전방지를 위해 고전압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쌈(일부 차량은 배터리 케이블 소켓에 절연 캡을 씌워야할 수도 있으므로,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정보 참조)
5. 고전압 배터리가 제거되면 가능한 손상 여부 점검

③ 전해액 누출 등 파손된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적 방전) 분리된 배터리는 운반·보관 전에 방전설비를 통하여 전기적 방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 배터리를 운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1. 배터리의 운반에 필요한 적정한 포장방식의 채택 및 방화·방수·방폭·절연·단열·부식 방지 등의 안전 방호 대책 수립
2. 배터리의 개별 포장 후 운반에 적합한 강도의 단단한 외부 포장재 포장 및 단락(short circuit, 短絡) 방지(2개 이상의 배터리 운반에 한함)
3. 액체류나 폭발위험성이 있는 다른 위험물과 같이 포장하거나,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같이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
4. 진동 및 충격 영향, 더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의 이동 방지 등 운반 중 위험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및 필요시 불연성 및 비전도성의 완충재 사용

제10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 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 보관시 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곳에 둠
2. 고온·화기·직사광선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3. 과도한 열이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뜨리거나, 기계적 부하 또는 구멍을 뚫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4. 배터리를 바닥에 둘 경우 아래에 고압 고무 절연 매트를 깔고 정상 설치된 방향으로 보관하며,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5. 배터리는 합선에 대해 충분한 절연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압 고무 절연 매트로 배터리를 덮어서 보관
6. 배터리를 보관하는 보관소에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며, 외부인에 의한 파손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 설치

제11조(보고 및 자료제출) 시·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 전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터리 반납 여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47호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